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892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초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저출생 해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나.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로,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는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이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사업이라고 판단, 여성·가족분야 전문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신규 추진하고자 함

다. 이에 2023 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규 모 : 지하 3층, 지하 5층(대지 6,488㎡, 연면적 22,519㎡)

○ 관련법령

-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다. 추경개요

1) 추경예산 : 320,720천원

※ 총 출연금액 : 16,870,042천원 (기정 출연금액 : 16,549,322천원 포함)

2) 추경 필요성

- 여성이 난자를 얼려두면 가임 연령을 넘어서더라도 임신을 계획했을 때 임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난임 지원 대책 발표(2023.3.9.) 이후 난자 동결 시술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조속한 시행 요구도 많은 상황임

3) 추경예산 산출 근거

- 추경 요청액 : 320,720천원

▸ 사업비 : 300,000천원

▸ 운영비 : 20,72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이정우(☎ 2133-5010)